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

1 폰트 불법 사용 행위

- 서체 파일을 CD에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
- 직원이 마음대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회사 업무에 사용
- 저작권자 표시가 없는 경우, 정당한 금액 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운로드해 사용할 경우
- A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을 B 프로그램에 이용할 경우

2. 번들 폰트 사용 이슈

- 한글과컴퓨터 번들 폰트에 대한 한양정보통신 사용범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및 컨설턴트 견해
 - 한양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 자사 컨설턴트 의견

3. 폰트 관리 방법

1. 폰트 불법 사용 행위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

폰트 불법 사용 행위

font
폰트 파일 (.ttf / .fon / .ttc)

전송 배
저작권 침해
CD에 폰트 파일 복제

미구매 또는 정품이 아닐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 구매 필요

직원 + 회사 = 양벌규정에 의해 법적 책임 有

회사에서 평소 불법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경우 회사는 면책 가능

- ① 서체 파일을 CD에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정
 - 서체 미구매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라이선스 구매 필요
- ② 직원이 마음대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회사 업무에 사용
 - 직원의 행위에 대해 같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양벌규정에 해당)
 - 단 회사에서 평소 감독-관리를 철저히 했을 경우 면책 가능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

폰트 불법 사용 행위

A 프로그램 설치



B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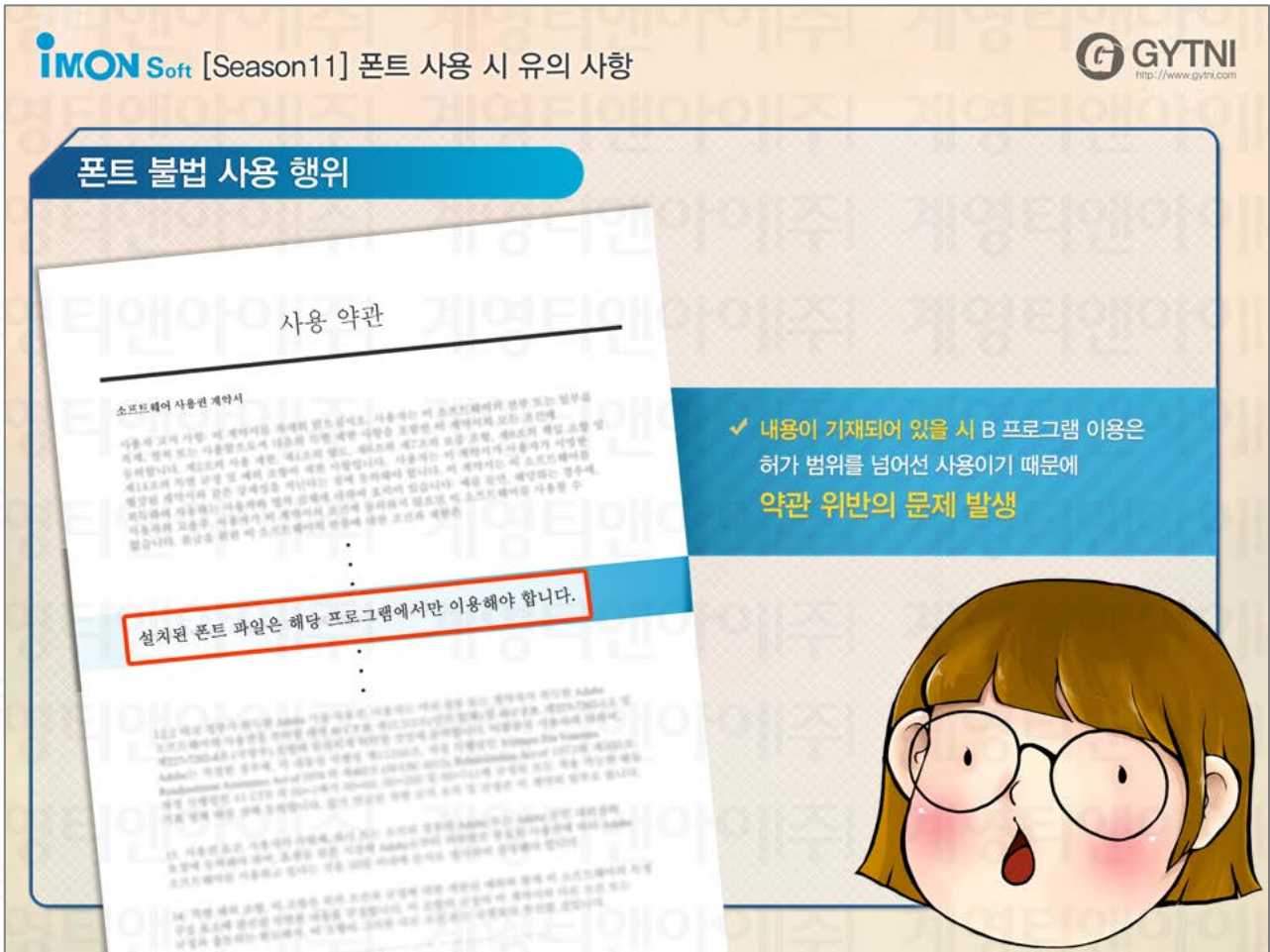
정품으로 A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면

저작권법상 책임이 없어 이용 가능



③ A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을 B 프로그램에 이용할 경우

- 정품으로 구매한 A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 설치된 폰트 파일을 B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책임을 지지 않음



- 단, 약관에 설치된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시 B프로그램에서의 이용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 위반의 문제 발생

- ④ 저작권자 표시가 없는 경우, 정당한 금액 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운로드해 사용할 경우
 - 저작권 침해 행위이므로 정당한 구매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2. 번들 폰트 사용 이슈 사례

한글과컴퓨터 번들 폰트 이슈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9법정 2001. 6. 29. 선고 99다22945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참조) 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주권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합성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임을 인정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판사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2. 한글오리시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자 및 이용자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3. 한글오리시스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프라인에서 복제하는 행위(순안용)를 위한 복제 행위 및 복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되고 있는 대상은 폰트파일 자체에 의해 발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견해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 하에 드립니다.

[FAQ]

Q. 글꼴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요?
A. 글꼴 자체의 집은 서체도안권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침해하지 않고 글자체의 저작권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4누5632 판결)

Q.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나요?
A.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관여의 입 장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2945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Q. 한글오리시스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합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길고말 경우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A. 정품으로 구매한 한글오리시스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결과물을 합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Q. 한글오리시스 설치 시 글꼴 파일이 자동으로 PC에 설치가 되는지에 문제가 되나요?
A. 한글오리시스를 이용자가 PC에 설치한 후 자동적으로 글꼴이 PC에 다운로드 되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인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폰트 파일을 활용한 결과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 가능**

① 한글과컴퓨터 번들 폰트에 대한 한양정보통신과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및 계영티앤아이 컨설턴트 의견

1) 한양정보통신

- 번들 폰트로 PDF를 만들어 내부 보관 또는 프린터 출력을 위한 PDF는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게시, 배포는 E-Book 라이선스 필요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 **GYTNI**
http://www.gytni.com

한글과컴퓨터 번들 폰트 이슈 사례

7-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 컴퓨터프로그램작품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 사용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함 (저작권법 제141조)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 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계약서 또는 이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권리자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중

-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범위 위반 사용으로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존재



2)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가능
 -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폰트 파일을 활용한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인지
- ▶ 단, 프로그램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계약 없이 범위 위반 사용 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존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중- 문화체육관광 부 발간)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 **GYTNI**
http://www.gytni.com

자사 컨설턴트 견해

폰트 파일 복제 + 폰트 파일 배포 =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해당 안됨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

3) 자사 컨설턴트 의견

-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 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이하 복제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품 구매한 프로그램의 서체를 이용해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허용한 기능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홈페이지 개시 가능)
만약 2차 저작물의 사용 범위의 문제가 존재하여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약관 위반 사항.
- 이런 경우 사용 범위에 대한 고지의 불분명함과 글꼴 제작사와 한컴오피스 간의 계약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3. 폰트 대응 방법

- 폰트는 사용 권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여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리 필요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 대본

안녕하세요~

오늘은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폰트 불법 사용 행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폰트 파일을 CD에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할 경우 대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구매 또는 정품이 아닐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직원이 폰트를 불법으로 설치해 회사 업무에 사용했을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직원과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평소 불법에 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경우 회사는 면책 가능합니다.

세 번째, A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을 B 프로그램에 이용할 시 정품으로 A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 약관에 설치된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B 프로그램 이용은 허가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기 때문에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저작권 표시가 없는 폰트 또는 정당한 구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설치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폰트 유의 사항을 인지하여 정확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많은 한글과컴퓨터 번들 폰트 이슈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A 기업에서는 한컴오피스 번들 폰트인 한양 폰트로 PDF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 배포하여 법무법인의 공문을 받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한양정보통신에서는 번들 폰트로 PDF를 만들어 내부 보관, 출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 배포는 E-Book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폰트 파일을 활용한 결과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사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사용 범위 위반으로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사 컨설턴트는 폰트 파일을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서 폰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작성 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약관 위반 사항이지만 이 경우 사용 범위에 대한 고지가 불분명하며

저작권사와 한글과컴퓨터 간의 계약을 알 수 없어 약관 위반이라고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폰트는 사용 권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여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다음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